

보존 관리계획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목표 1. 바다거북 폐사의 직·간접 요인 감소

프로그램	조치	진 아 신	이행상황
1.1 바다거북개체군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요인을 정의하고 문서화	ㄱ) 바다거북 개체군 위협요인에 대한 현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ㄴ) 기준자료(baseline data) 를 수집하고 위협의 성질과 범위에 대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감독 ㄷ) 전통적인 어획과 의도적 포획, 부수어획, 기타 폐사 원인에 영향 받는 개체군 결정		
1.2 이러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례 규정 및 적용	ㄱ) 이 지역에서 바다거북 개체군 보호 관리 선례로 삼을 수 있는 규율을 정의하고 문서화 ㄴ) 바다거북 개체군 보호 관리 선례를 채택하고 적용		
1.3 바다거북 개체군을 위협하는 부정적 경제적 유인을 수정하는 프로그램 이행	ㄱ)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와 상호작용하는 공동체 간 사회경제 연구를 수행 ㄴ) 위협 및 폐사 감소를 위해 경제적 유인을 바람직하게 수정하고 그 이행 프로그램 개발 ㄷ)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과 자금 정의		

<p>1.4 어로활동 중 부수어획과 폐사를 최대한 실질적으로 감소</p>	<p>ㄱ) 바다거북의 탈출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설비, 지역적 폐쇄, 계절적 폐쇄 등의 장비, 조치,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부수어획을 최소화</p> <p>ㄴ) 이러한 수단의 이행 장려를 위한 어선 감시시스템, 바다·항구·육지에서 조사, 국가 송선옵서버 프로그램 등의 절차와 훈련 프로그램 개발</p> <p>ㄷ) 정보 교환 및 이러한 조치 촉진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조인국에 기술적 지원 제공</p> <p>ㄹ) 영해와 공해에서 부수어획을 저감시킬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수산업계와 어업관리 기구를 연계시키고 조정</p> <p>ㅁ) 공해에서 거대유자망의 사용중지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46/215 지지</p> <p>ㅂ) 바다와 해변에서 어구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망보유 및 어망재활용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p> <p>ㅅ) 해상선박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항구 시설물을 제공하고 사용을 확실히</p>		
------------------------------------------------------	---------------------------------------------------------------------------------------------------------------------------------------------------------------------------------------------------------------------------------------------------------------------------------------------------------------------------------------------------------------------------------------------------------------------------------------------------------------------------------	--	--

<p>1.5 바다거북과 알, 신체부위, 혹은 생산품의 의도적 포획 (포획 및 살생) 및 국내적 거래 금지, 단 지역주민에 의한 전통적 어획활동이 관할구역에 의해 바다거북 개체군과 그 서식지의 보호,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저해 하지 않으며 문제시 되는 바다거북 개체군이 포획을 해도 지속가능한 경우 허가</p>	<p>ㄱ)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 의도적 포획과 국내 거래 금지 입법 ㄴ) 전통적으로 바다거북과 알을 어획하는 정도와 그 영향을 평가 ㄷ) 국제적 어획 수준 제한을 포함하는 관리 프로그램 마련 ㄹ) 소비용과 비소비용 모두에 대한 바다거북의 문화적, 전통적 가치와 경제적 활용정도를 결정 ㅁ) 다른 국가와 협력 통하여 적합한 곳에서는 전통적 바다거북과 알의 어획활동의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관리 합의문을 협상하고 이러한 어획활동이 보호 노력을 저해 하지 않도록 보장</p>		
-----------------------------------------------------------------------------------------------------------------------------------------------------------------------------	---------------------------------------------------------------------------------------------------------------------------------------------------------------------------------------------------------------------------------------------------------------------------------------------------	--	--

<p>1.6 부화하여 깨어나는 새끼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산란에 사용되는 해변 관리 프로그램 개발</p>	<p>ㄱ) 산란지와 해변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ㄴ) 부화하여 깨어나는 새끼의 수와 생존률이 최대가 되도록 알과 갯 부화한 새끼 바다거북의 폐사를 줄일것, 가능한 곳에서는 자연적 과정에 중점을 둔 보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ㄷ) 야생동물과 가축에 의한 바다거북 알, 갯 부화한 새끼 바다거북, 산란 시 암컷 거북의 폐사 최소화</p>		
--------------------------------------------------------------------------------	---------------------------------------------------------------------------------------------------------------------------------------------------------------------------------------------------------------------------	--	--

목표 2. 바다거북 서식지 보호, 보존 및 복원

프로그램	조치	진 아 신	이행상황
2.1 바다거북 서식지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회유경로나 산란지, 산란과 산란 사이 머무르는 지역 혹은 색이장 등 주요 서식지를 확인 ㄴ) 주요 서식지에 보호/보존구역, 성역 또는 임시배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거나 이 지역에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조치(예를 들어 어구변형, 어선 통행 제한) ㄷ) 보호구역 이외 주요 서식지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 유인을 개발 ㄹ) 바다와 해안 개발, 바다거북 개체군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간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실시 ㅁ) 각 관할구역 내에서 해변과 해안 사구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입법, 예를 들어 건물의 위치와 설계, 인공조명의 사용, 산란지에서 차량 운행 등 ㅂ) 바다거북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폐기물을 포함하여 육지오염이나 해양오염으로부터 수질을 감시하고 향상 ㅅ) 해양자원 채취에서 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물의 사용에 대한 기존 금지를 강화적용 		
2.2 손상된 바다거북 서식지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해안개발에 시각적 장애물을 제공하고 적합한 해변 온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는 산란지에 가능하다면 토종 식물과 함께 전면사구에 재식생 ㄴ) 바다거북이 산란과 새끼의 부화를 저해하는 폐기물 제거 ㄷ) 손상된 산호초 복원 ㄹ) 손상된 맹그루브와 해양식물 서식지 복원 		

목표 3. 조사, 감시, 정보교환을 통한 바다거북 생태와 개체군의 이해 증진

프로그램	조치		이행상황
3.1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호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바다거북과 서식지에 대한 기준치 조사(baseline studies)시행 또는 2 차정보 수집 ㄴ) 보호상태 평가를 위하여 우선순위 바다거북 개체군에 대한 장기적 감독 시작 혹은 지속 ㄷ) 바다거북 개체군의 유전특정을 결정 ㄹ) 표지방류, 유전조사, 위성추적을 통하여 이동경로 확인 ㅁ) 바다거북 수 변동역학과 생존율에 대한 연구 수행 ㅂ) 바다거북 질병 빈도와 병리학에 대한 연구 수행 ㅅ) 연구에서 전통적 생태학 지식 사용 고양 ㅇ) 연구와 감시 활동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 		
3.2 공동 연구와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지역 및 하위지역 조치계획 속에서 필요한 점 감독 ㄴ) 바다거북의 유전자 확인, 보호상태, 이동, 생물학적·생태학적 측면에 대한 공동 연구와 감시 		

<p>3.3 위협감소 시키고 보호 관행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분석</p>	<p>ㄱ) 보호 활동 우선순위 개체군 지정 ㄴ) 개체군 변동 확인 ㄷ) 관리를 향상시키고 위협을 저감하며 보호 활동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결과 활용(예를 들어 부화 관리관행, 서식지 손실 등)</p>		
<p>3.4 정보교환</p>	<p>ㄱ) 방법론과 자료수집 수준을 표준화하고 특히 산란지에 대한 감독, 색이장 조사, 유전자 샘플링, 폐사율 수집을 위한 합의된 일련의 규약 개발 ㄴ) 정보배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 ㄷ)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호에 가장 좋은 실질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규칙적으로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국가, 과학연구 기구,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사이의 전문가 교환 ㄹ) 보호 관리를 위하여 바다거북과 서식지에 대한 전통지식 배포</p>		

목표 4. 바다거북과 서식지 위협에 대한 대중적 인식 고양 및 보호 활동 참여 증대

프로그램	조치		이행상황
4.1 대중교육 인식개선 및 정보화 프로그램 수립	ㄱ) 교육자료의 수집, 개발, 배포 ㄴ) 지역주민 교육/정보 센터 설립 ㄷ) 정확한 대중매체 정보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ㄹ) 목표집단(예를 들어, 정책결정자, 교사, 학교, 어업 종사자, 대중매체)에 집중된 교육과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ㅁ) 학교 교과과정에 바다거북 생물학과 보호 문제를 포함하도록 장려 ㅂ) 바다거북 보호와 생물학 관련 특별활동을 조직(예를 들어 거북의 날, 거북의 해, 학술토론회, 바다거북 여행길 따라가기)		
4.2 보호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체생계 수단 개발	지역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하에 바다거북과 서식지에 해롭지 않은 대체 생계수단(수입창출활동을 포함)을 확인하고 이용을 촉진		
4.3 대중 참여 촉진	ㄱ) 보호 관리 수단의 계획과 이행에서 이해당사자와 특정 지역주민 참여 ㄴ) 연구와 보호 활동에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사기업, 일반인 (예를 들어, 학생, 자원봉사자, 어업종사자, 지역 주민)의 참여 장려 ㄷ) 적합한 곳에서는 대중 참여 확대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실행(예를 들어 표지표 회수를 위한 티셔츠, 증명서, 자격증)		

목표 5.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 고양

프로그램	조치	이행상황
<p>5.1 바다거북 산물과 관련된 법률제정, 거래 정보 교환 불법 거래 근절, 협력적 집행활동을 위한 조인국과 비조인국의 협력과 지원</p>	<p>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에 당사국이 아닌 양해각서 조인국의 가입 장려</p> <p>ㄴ) 국가적 수준에서 바다거북과 바다거북알, 그 일부분 혹은 산물 거래가 CITES 상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검토</p> <p>ㄷ) 다른 조인국과 CITES 사무국 및 여타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훈련을 제공하고 CITES 와 조화를 더욱 촉진</p> <p>ㄹ) 감시를 통하여 불법적 국제거래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고 감소시키고 가능하다면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위한 협력 추구</p> <p>ㅁ) 예를 들어 양해각서 사무국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인국 회의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협약에 합치여부와 거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p> <p>ㅎ) 감시와 법률집행, 각국 집행능력 격차 확인, 집행기관 훈련을 통하여 불법적 국내거래를 확인, 방지, 감소하고 가능하다면 금지</p>	

프로그램	조치		이행상황
<p>5.2 요청이 있을 시에는 조인국과 비조인국의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호 관리를 위한 국가 및 하위지역 (sub-regional), 지역 이행계획 개발과 이행을 지원</p>	<p>ㄱ) 관련 정부 기구와 연구소, 비정부기구, 지역주민, 여타 이익당사자와 합의를 통하여 이행계획에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관리 수단을 개발</p> <p>ㄴ)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행계획을 확인</p> <p>ㄷ) 성공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국가간 협력이 요구되는 곳에서 특정한 지역적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p> <p>ㄹ) 바다거북 개체군의 보호 상태에 대한 변화 뿐 아니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최신 기술과 지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계획을 검토</p>		
<p>5.3 정보교환 촉진 및 협력을 위한 기제 고양</p>	<p>ㄱ) 하위지역 차원의 기존 협력 체제 확인 및 강화</p> <p>ㄴ) 원활한 연대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홈페이지와/혹은 정보지 만들기</p> <p>ㄷ)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정보 홈페이지 구축</p> <p>ㄹ) 바다거북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와 기구 안내책자 발간</p> <p>ㅁ) 하위지역 내에서 혹은 국가간에 이동하는 바다거북의 협력적 관리를 위한 연대구축 및 필요한 곳에서는 협력적 관리에 대한 합의를 정례화</p> <p>ㅂ) 초국경적 해양보호 지역을 설립이 가능한 곳에서는 정치적 국경을 사용하기 보다는 생태적 경계선을 사용하는 데 협력</p> <p>ㅅ) 국가적 차원에서 바다거북 보호 상태에 대한 보고와 정보교환을 위한 능률적인 형식 개발</p> <p>ㅇ)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협약(CMS: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당사국이 아닌 양해각서 조인국의 협약가입 장려</p>		

프로그램	조치		이행상황
	<p>ㄷ) 유엔 공해어업협정 (UN Fish Stocks Agreement (1995)), 유엔식량농업기구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해증진을 위한 협정(FAO Compliance Agreement: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유엔식량농업기구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등 국제 어업 조약에 당사국이 아닌 양해각서 조인국의 가입 장려</p> <p>ㄹ) 바다거북의 부수어획에 대한 자료 수집의 관점에서 지역 수산업 단체와 연계를 맺고 그들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공해 상에서 바다거북 보호 수단을 사용하도록 장려</p>		
5.4 보호 수단을 강화 할 능력 배양 (capacity building)	<p>ㄱ) 인적자원, 지식, 시설의 측면에서 능력배양의 필요성 확인</p> <p>ㄴ) 바다거북 보호와 관리 기술을 관련 훈련(예를 들어 워크숍)을 기관, 개인, 지역 주민에게 제공</p> <p>ㄷ) 훈련 프로그램과 워크숍 조직</p> <p>ㄹ) 대학, 연구소, 훈련원 기타 관련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p>		
5.5 보호를 위한 법률의 집행 강화 및 향상	<p>ㄱ) 바다거북 보호에 문제나 장애를 다루는 국내 정책과 법령 재검토</p> <p>ㄴ) 관할 구역 넘어서 그리고 관할 구역 간 호환 가능한 법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 집행 상 협력 (양자적·다자적 조약 혹은 정보공유)</p>		

목표 6. 보호와 관리 계획을 포함한 양해각서의 이행 촉진

프로그램	조치	진 야 성	이행상황
6.1 양해각서 회원국 확대 및 양해각서상 활동의 지속성 보장	ㄱ) 비조인국의 양해각서 조인을 독려 ㄴ) 양해각서에 대한 인식고양을 위하여 비조인국이 참여하는 하위지역 워크샵 마련 ㄷ) 첫 번째 조인국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를 위한 수정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간표 작성		
6.2 보호 관리 계획에 합치하는 목표 보장을 위해 양해각서 사무국과 자문기구의 역할 촉진	ㄱ) 양해각서 사무국 지원을 위한 신뢰할 만한 자금출처 확보 ㄴ) 첫 번째 조인국 회의에서 자문기구 회원 지명 ㄷ) 조인국에 자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사무국과 자문기구 간의 의사소통 창구 마련		

<p>6.3 양해각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 모색</p>	<p>ㄱ)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호와 관리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p> <p>ㄴ) 정부와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기구(UNDP),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엔환경기구(UNEP), 국제환경기금(GEF) 등 공여기구의 자금지원 모색</p> <p>바다거북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예를 들어 수산업, 관광업, 석유산업, 부동산)으로부터 자금지원과 기타 성금 모색</p> <p>ㄷ)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경제적 수단 모색</p> <p>ㄹ) 소규모 자금창설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정 국가 자금지원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기업, 재단, 비정부기구 접촉</p> <p>ㅁ) 관리 하의 생태관광과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통하여 보호 관리 활동 자금 생성</p> <p>ㅂ) 다른 지역적/국제적 보호 사무국과 (자본 유치, 제도적 지원 제공의 측면에서) 시너지 창출</p> <p>ㅅ) 국제적 자금공여 혹은 조인국이 효과적으로 바다거북 개체군을 관리하도록 직접적 어획(포획 및 살생)의 전면적 금지포함 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 모색,</p>		
<p>6.4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호 목적의 정부와 비정부 부문 협력 증대</p>	<p>ㄱ)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호 관리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검토</p> <p>ㄴ) 국가 바다거북 보호와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책임 기관 지정</p> <p>ㄷ) 국가적 연대 개발 그리고/또는 강화 등을 통하여 정부와 비정부부문 간 협력 고양</p>		